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74 발의연월일: 2022. 5. 20.

발 의 자:김병기·김병욱·김진표

박성준・소병철・오영환

이개호 • 전용기 • 정일영

진성준 · 최인호 · 한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(제54조제3항)은 "영상정보를 분실·도 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"라고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, '당한 자'라는 문언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,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.

어린이집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훼손당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, 그보다 가벌성이 큰 행위,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,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"훼손한 자"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

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절취 · 변조 또는 훼손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벌칙) ① (생 략)	제54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2
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	
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
	절취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